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6-10-20

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

판 결

사 건 2026고단101270 저작권법위반

피 고 인 A

검 사 김지아(기소), 박두병(공판)

판 결 선 고 2026. 10. 1.

주 문

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.

이 유

공소사실

누구든지 타인의 저작재산권,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, 공연, 공중송신, 전시, 배포, 대여,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.

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6. 2. 9. 부천시 원미구 B건물, C호에서 IP(IPV4 1 생략)로 토렌트 프로그램(qBittorrent5 1.0)에 접속하여 저작권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의 허락을 받지 않고 영화저작물인 'E'를 다운로드 동시에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여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6-10-20

판단

가.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: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

나. 친고죄 : 저작권법 제140조

다. 공소기각판결 :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(피해자의 고소취하 및 합의서가 제출됨)

판사 홍예연 _____